##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54 발의연월일: 2025. 3. 5.

발 의 자:전종덕·정혜경·김 윤

용혜인 • 이상식 • 추미애

송옥주 · 이수진 · 서미화

천하람 · 서삼석 · 윤종오

박정현 • 한창민 • 김선민

김종민 · 이학영 의원

(17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그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·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, 표준근로계약서 작성,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,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3제1항제5호, 제35조의4제1항, 제35조의6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직무수행 중 수급자 또는 그가족으로부터 폭언·폭행·상해 또는 성희롱·성폭력을 당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제3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직무 수행상 어려움을 겪는 등 고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직무 수행을 중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해당 수급자 및 그 가족과의 분리,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·폭행·상해 또는 성희롱·성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

- 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행위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
-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직무수행을 중단하였거나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5조의6(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등) 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과 제8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②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이어야 한다. 다만,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수 있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장기요양 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 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(이하 "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 준"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④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에는 기본급, 각종 수당 및 복리 후생비, 장기근속장려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요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「통계법」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직종별 임금 중 서비스 종사자의 시간당 임

금 총액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, 동일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직종 여부를 불문하고 경력을 합산하여야 한다.
- ⑥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제23조제1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가정 등으로,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또는 둘 이상의 수급자의 가정 등 사이를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급여제공 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적시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제2항 중 "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"를 "그 내용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"로, "해당"을 "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해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

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"를 "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에"로 한다. 제46조제1항 중 "16인 이상 22인"을 "22인 이상 30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2
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의3(영상정보의 열람금지	제33조의3(영상정보의 열람금지
등)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	등) ①
설치・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	
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	
여서는 아니 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
	관에서 직무수행 중 수급자
	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ㆍ
	<u>폭행·상해 또는 성희롱·성</u>
	폭력을 당하여 이와 관련된
	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
	시기・절차 및 방법 등 보건
	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요청하는 경우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5조의4(장기요양요원의 보호)	제35조의4(장기요양요원의 보호)
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	①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호
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	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직무

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수행상 어려움을 겪는 등 고충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
- 1.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 양요원에게 폭언·폭행·상해 또는 성희롱・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
- 2.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 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

② ~ ⑤ (생 략) <신 설>

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직무 수 행을 중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 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장기요 양요원에 대하여 해당 수급자 및 그 가족과의 분리,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.

- 1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 터 폭언 · 폭행 · 상해 또는 성 희롱 ·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를 입은 경우
- 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 터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 구받은 경우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 요양요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 로 직무 수행을 중단하였거나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다는 것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 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

<u>⑥</u> (생 략) <신 설> 된다.

① 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35조의6(장기요양요원의 근로
조건 및 처우 등) ① 장기요양
기관은 장기요양요원과 제8항
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②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 간은 1주일에 15시간이어야 한 다. 다만, 장기요양요원의 명시 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 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 요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장 기요양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(이하 "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"이라 한다) 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에는 기본급,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, 장기근속장려금 등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요원 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「통계 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직종별 임금 중 서비 스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.

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요양요 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, 동 일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직종 여부를 불문하고 경력을 합산 하여야 한다.

⑤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 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제23조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 자의 가정 등으로, 수급자의 가 정 등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또는 둘 이상의 수급자의 가정 등 사이를 이동하는 데에 소요 제36조의2(시정명령) 특별자치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시정을 명할 수 있다.
1.·2.(생략)

제38조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) ① (생 략)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

	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1	<u>記</u>
	아 급여제공 시간에 포함하여	겨
	<u>야 한다.</u>	
	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9조약	<u>케</u>
	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학	<u>할</u>
	때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	1]
	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.	
	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계약	뱢
	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적시학	<u>한</u>
	표준근로계약서를 고시하여	) 
	한다.	
저	]36조의2(시정명령)	-
		-
		-
		-
		-
		-
	,	
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
	3.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	<u> ]</u>
	지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	
저	]38조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	긔
	청구 및 지급 등) ① (현행회	<b>가</b>
	같음)	
	②	-

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면,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)을 <u>해당</u>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.

#### ③ ~ ⑤ (생 략)

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<u>보건복지</u>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.

#### ⑦・⑧ (생 략)

제46조(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) 저

-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 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<u>16</u> 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

그 내용을
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
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
여야 하며
<u>인</u>
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
<u>하여 해당</u>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6
인건비에
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요원
적정 인건비 기준에 따라 장기
요양요원에
 ⑦・⑧ (현행과 같음)
세46조(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)
①
<u>22</u>
<u> </u>
2

하고,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.

-----

-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③·④ (생 략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
- ③ ④ (현행과 같음)